
Policy and Law Report _Vol.11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6 ~ 12.12) -

December 1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 /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p>기획재정부는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말 기준 총 97.3조원(88.5%) 달성, 올해말까지 99.2% 달성 목표 ②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기재부) ③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관계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배추 비축 추진,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깐마늘 6천톤, 피마늘 4천톤)을 통해 가격 안정 도모 - 계란은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여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인하 ④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 적극 지원 	<p>2021-12-09</p>
<p>산업통상자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p>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와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EU의 바이오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해소 협력을 요청함</p> <p>주요 의제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국의 경제현황 및 포스트코로나 경제·산업정책 공유 ② 분야별 협력 : 미래차, 배터리 등 지속가능 모빌리티, 전자전기 및 반도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③ 산업기술 분야 R&D 공동 프로그램 및 향후 포럼 개최 방안 논의 	<p>2021-12-09</p>

부처	내용	일시
금융위원회	<p>•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p> <p>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계 및 유관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②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에 대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의 영업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검토 등이 있음 <p>그리고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①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②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③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p>	2021-12-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할 6대 원칙, 16개 점검항목을 제시함</p> <p>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도시가 행정·교통·복지 등 기능별로 다양하게 수집·축적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적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D(Privacy by Design) 원칙 :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 **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 ①적법성, ②목적제한, ③투명성, ④안전성, ⑤통제권 보장, ⑥책임성 ② 「개인정보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6단계 별로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021-12-08

부처	내용		일시																											
< 개인정보 보호조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25 407 459 450" style="width: 15%;">구분</th> <th data-bbox="464 407 699 450" style="width: 25%;">6단계</th> <th data-bbox="703 407 1310 450" style="width: 60%;">16개 점검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5 456 459 965"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처리단계별 보호조치</td> <td data-bbox="464 456 699 555"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① 기획·설계 단계</td> <td data-bbox="703 456 1310 499">(1) 기획·설계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적용</td> </tr> <tr> <td data-bbox="703 506 1310 548">(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td> </tr> <tr> <td data-bbox="464 555 699 707"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② 수집단계</td> <td data-bbox="703 555 1310 598">(3) 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확보</td> </tr> <tr> <td data-bbox="703 604 1310 647">(4) 동의 이외의 수집 근거 확인</td> </tr> <tr> <td data-bbox="703 654 1310 696">(5) 정보주체 이외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출처 등 안내</td> </tr> <tr> <td data-bbox="464 714 699 813"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③ 이용·제공 단계</td> <td data-bbox="703 714 1310 757">(6)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확인</td> </tr> <tr> <td data-bbox="703 763 1310 806">(7) 목적 외 이용·제공시 별도 근거 확인</td> </tr> <tr> <td data-bbox="703 813 1310 855">(8) 가명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활용</td> </tr> <tr> <td data-bbox="464 819 699 965"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④ 보관·파기 단계</td> <td data-bbox="703 862 1310 904">(9)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한 보관·관리</td> </tr> <tr> <td data-bbox="703 911 1310 954">(10) 개인정보의 적법한 파기</td> </tr> <tr> <td data-bbox="325 972 459 1272"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상시보호 조치</td> <td data-bbox="464 972 699 1124"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⑤ 관리·감독</td> <td data-bbox="703 972 1310 1014">(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td> </tr> <tr> <td data-bbox="703 1021 1310 1064">(1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td> </tr> <tr> <td data-bbox="703 1070 1310 1113">(13)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 관리·감독</td> </tr> <tr> <td data-bbox="464 1131 699 1272"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⑥ 이용자 권리보장</td> <td data-bbox="703 1131 1310 1173">(1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및 안내</td> </tr> <tr> <td data-bbox="703 1180 1310 1223">(15) 이용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td> </tr> <tr> <td data-bbox="703 1229 1310 1272">(16)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이행</td> </tr> </tbody> </table>				구분	6단계	16개 점검항목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① 기획·설계 단계	(1) 기획·설계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적용	(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② 수집단계	(3) 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확보	(4) 동의 이외의 수집 근거 확인	(5) 정보주체 이외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출처 등 안내	③ 이용·제공 단계	(6)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확인	(7) 목적 외 이용·제공시 별도 근거 확인	(8) 가명정보 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활용	④ 보관·파기 단계	(9)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한 보관·관리	(10) 개인정보의 적법한 파기	상시보호 조치	⑤ 관리·감독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의 지정	(1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 관리·감독	⑥ 이용자 권리보장	(14) 개인정보처리방침 의 공개 및 안내	(15) 이용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	(16)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이행
구분	6단계	16개 점검항목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① 기획·설계 단계	(1) 기획·설계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적용																												
		(2)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② 수집단계	(3) 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확보																												
		(4) 동의 이외의 수집 근거 확인																												
		(5) 정보주체 이외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출처 등 안내																												
	③ 이용·제공 단계	(6)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제공 확인																												
		(7) 목적 외 이용·제공시 별도 근거 확인																												
	(8) 가명정보 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활용																													
	④ 보관·파기 단계	(9)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한 보관·관리																												
		(10) 개인정보의 적법한 파기																												
상시보호 조치	⑤ 관리·감독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의 지정																												
		(1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 관리·감독																												
	⑥ 이용자 권리보장	(14) 개인정보처리방침 의 공개 및 안내																												
		(15) 이용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																												
		(16)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이행																												

부처	내용	일시
관세청	<p>• <u>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시행</u></p> <p>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이 마련됨</p> <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p>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함 <p>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 제공 *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 : www.customs.go.kr/ftoportalkor/main.do <p>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임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12-0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기획재정부</p>	<p>• 「부가가치세법」(2022.7.1. 시행 예정)</p> <p>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p> <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 (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p>②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제46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p>③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p>2021-12-08</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p>④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p>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제60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p>⑥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2022년은 23.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p>• 「소득세법」 (2023.1.1. 시행 예정)</p> <p>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p> <p>그리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p>②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제59조의4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2021-12-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제81조의2제1항, 제81조의2제3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p>④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제86조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p>⑤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p>⑥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p>⑦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제89조제1항제4호가목·나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p>⑧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제1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p>⑨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 (제174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p>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9. 시행)</p> <p>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각종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20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p> <p>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등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은 이사 등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2,00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12-07
	<p>•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9. 시행)</p> <p>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나 인력 현황 등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0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p> <p>이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을 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p>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2.4.20. 시행 예정)</p> <p>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p> <p>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p> <p>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 일신전속권: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p> <p>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면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함 (제2조제1호가목 신설)</p> <p>-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p>	2021-12-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p>②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제2조제1호 타목 신설)</p> <p>③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p>	
국토 교통부	<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2.3.8. 시행 예정)</p> <p>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p> <p>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p> <p>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제2항)</p>	2021-12-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6.8. 시행 예정)</p> <p>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p> <p>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p>	2021-12-07
공정거래위원회	<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6.8. 시행 예정)</p> <p>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p> <p>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단체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2021-12-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의4 신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3항 신설) ⑤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제19조제4항, 제20조제6항) ⑥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21조제4항) ⑦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제21조제5항 신설) ⑧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의2 신설) ⑨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의3 신설) ⑩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제34조제2항) 	
금융위원회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3.10. 시행 예정)</p> <p>금융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p> <p>이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등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와 그 추가등록의 방법·절차,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인가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 변경의 유형과 완화된 인가요건의 내용,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절차,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범위 등 구체화 (제19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매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를 투자매매업, 인수업을 제외한 투자매매업, 인수업만 하는 투자매매업에 각각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와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로 정함 - 투자매매업자 등이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절차 및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p>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인가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제19조의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인가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법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 총수를 전부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한정하고,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영업소를 그 국내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그 국내법인을 지점·영업소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국내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완화되는 인가요건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과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한 인력·설비에 관한 요건 등으로 한정함 <p>③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과 지급 보류의 방법·절차 마련 (제73조, 제73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예치·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금액, 지급보류 사유, 지급보류 기간,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p>④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인가요건 구체화 (제348조제5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으로 정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는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금융기관 등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따르도록 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1.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안 별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p>※ 의견 제시기간 : 12/10(금)~12/3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p>	2021-12-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기업 벤처부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별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추천할 시 그 지정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동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 6조 제2항·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동 추천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p>②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 1항·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p>※ 의견 제시기간 : 12/7(화)~22년 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로 제출</p>	2021-12-0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p> <p>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또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p>	2021-12-09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6인)」</p> <p>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p> <p>하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용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 역시 그 규모나 운용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p> <p>이에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제45조 등)</p>	2021-12-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2인)」</p> <p>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였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6, 제121조의27, 제121조의28, 제121조의29, 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및 제121조의32)</p>	2021-12-03
	<p>•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p> <p>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p>	2021-12-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p> <p>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p> <p>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p> <p>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5 신설)</p>	2021-12-09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음</p> <p>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거래소가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날 발전회사로부터 공급 가능한 용량을 입찰 받고,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함</p> <p>전력거래소는 결정된 시장가격을 토대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기의 운전조합과 출력을 결정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발전량은 발전기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측정됨</p> <p>발전회사는 전력거래 종료 2일 후에 입찰, 계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력거래에 관련된 입찰, 발전계획 수립, 계량, 정산 등의 일련의 절차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p> <p>그러나 발전기 또는 전력계통의 사고 등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에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기 운영의 우선순위와 다른 예외적인 지시를 할 수 있음</p>	2021-12-0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그런데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로 발전기를 운영한 발전회사가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지시의 경위 또는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거래소 지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 및 제45조)</p>	
보건복지위원회	<p>•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p> <p>그러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제16조제4항 신설)</p>	2021-12-09
환경노동위원회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p>	2021-12-06

④ 본회의(12.9) 통과 주요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광고·판촉행사를 강제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는데 미비점이 있음이 확인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②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시에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 ④ 가맹사업법에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함 	2021-12-09
정무위원회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권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문성 부족,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격차 등으로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p> <p>하도급 계약의 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관행적 불공정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의 방법 외에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 ②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자 등 입찰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③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및 동의를결제도 도입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함(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p>	2021-12-09
기획재정위원회	<p>•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p> <p>통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세관장 등에게 다시 개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p> <p>②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함</p> <p>③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④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p>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청 고시와 시행령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p> <p>주류면허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청 고시와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함 ② 주세 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2021-12-09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p> <p>희소성이 높고 입출고 전과정에서 생명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뇌연구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커짐</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수집·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제공 등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p>	2021-12-09
	<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클라우드컴퓨팅이 비대면 사회의 핵심 기반 정보처리체계로서 보안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한 인증제도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p>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p> <p>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p>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p> <p>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소비 과정이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p> <p>산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 방대한 범위 등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④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⑦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p>2021-12-09</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p> <p>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p> <p>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장비·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p> <p>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p> <p>⑬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활성화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p> <p>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5조)</p>	
환경노동위원회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p> <p>②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p> <p>③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p> <p>④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p>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노동위원회	<p>•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p> <p>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②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③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021-12-09
국토교통위원회	<p>•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과 민간참여자의 이윤을 제한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 협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③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함 	2021-12-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p>•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수용권한을 행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함</p>	2021-12-09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2/1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8호 발간	
국회도서관	12/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1호 발간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	
	12/14(화)	「현안, 외국에선?」 제25호 발간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12/16(목)	「최신정책정보」 발간 - 주요 외국 싱크탱크기관이 발간한 최신 정책보고서의 요약문과 외국의 주요 정책자료 중 최근 2년 이내의 번역리스트 수록	
	12/16(목)	「국외현안리포트」 발간 - 디지털 서비스: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방정부 교육기관 설립	
예산정책처	12/16(목)	「NABO Focus」 제39호 발간 - 202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12/17(금)	「NABO 재정동향&이슈」 제18호 발간 - 국가재정상태 진단 및 주요 재정현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입법조사처	12/13(월)	「NARS 현안분석」 제226호 발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2/13(월)	「이슈와 논점」 제1901호 발간 -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	
	12/14(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부혁신 성과와 개선방향	온라인
	12/14(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온라인
	12/14(화) 16: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친환경차량 도입 관련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온라인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12/14(화) 16: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온라인
	12/15(수) 15: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 사업화	온라인
	12/16(목) 13: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저성장시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역할과 과제	온라인
	12/16(목)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미국 다자협약체 현황과 전망	온라인
	12/17(금)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교 검토	온라인
미래연구원	12/16(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3호 발간	

[별첨1] 제392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2/14(화)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12/14(화) 10:00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문체위)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청회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3(월) 09:30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 포럼 -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이태규 의원실, 한국벤처창업학회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3(월) 09:30	(2040 청년다방) 생소한 NFT 니가 알고 싶다 - NFT와 산업의 미래	류호정, 장경태 의원실, 국회2040청년다방	온라인 (ZOOM)
12/13(월) 14:00	국회정책토론회 -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 방안	신정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3(월) 16:00	(2040 청년다방) 생소한 NFT 니가 알고 싶다 - 블록체인(NFT), 메타버스는 되고 게임은 안되나	류호정, 장경태 의원실, 국회2040청년다방	온라인 (ZOOM)
12/14(화) 09:15	메디컬 헬스푸드 의 제도적 육성 방향 - 초고령시대 고령친화식품 도입 필요성과 더불어	전혜숙 의원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5(수) 14:00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	유경준 의원실, 서울특별시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5(수) 14:00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박상혁, 장경태, 진성준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16(목) 10:00	우주개발 진흥법, 작전영역으로서의 우주	김진표, 김병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16(목) 14:00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강병원 의원실, 대한응급의학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6(월)	「팩트북」 제92호 발간 -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1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 발간 -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	
입법조사처	주중	「NARS 입법·정책」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6(월) 13:30	지속 가능한 K엔터산업 간담회 - K엔터산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7(화) 10:00	한국 ESG 금융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이용우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0(금) 10:30	해킹 보안 컨버런스 The 12th Secure Korea 2021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이상민, 서병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